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7.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②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택시기사는 동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공고일 현재 영업 중이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개인택시기사는 관할관청을 통해 추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관할관청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허 현황 통보 사전 조치 필요)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취소, 양도, 양수, 사망, 상속, 폐업 상태가 아닐 것(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기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간주)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일	신청서 접수기간	비고
8.17.~10.31.	공고일~11.30.(화)	
11.10이후	11.1.~12.10.(금)	

* 신청서 양식은 <붙임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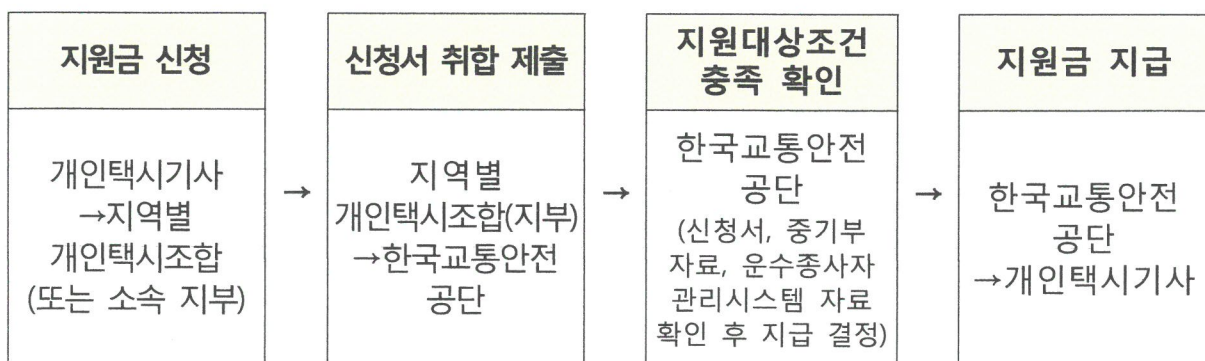
※ 개인택시기사 본인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 희망회복자금 지원 시기 >

시 기		대 상
신속지급	1차 (8.17일~)	- 버팀목자금플러스 既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
	2차 (8.30일~)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9월말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이의신청 (11월말 예정)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 (지원절차)



○ (지급시기) '21. 9월 초 ~ 12월 말까지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핸드폰 문자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지원금은 지급 확정 문자 통보 후 5일 이내 지급 예정

○ (이의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부지급 통보 받은 날부터 11.30까지 (단, 11.1. 이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2.20까지)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개인택시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일부터 11.30까지(단, 11.1. 이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2.20까지)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첨부된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참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7-7351), 국토교통부(☎ 1599-0001)을 통해 문의